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805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548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1년 가산세 2,960,478원, 2012년 가산세 9,181,624원, 2013년 가산세 1,288,897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898,100원의 부과처분 중 60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371,460원의 부과처분 중 2,453,2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의 부과처분 중 1,456,5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5%, 같은 피고가 25%를,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5%, 같은 피고가 25%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6. 1. 4. 원고에게,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1,000원(가산세 2,960,478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4,590원(가산세 9,181,62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54,620원(가산세 1,288,89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898,100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371,46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각 "(가산세 포함)"을 삭제한다.

○ 제3쪽 제12행의 "하였다." 다음에 "마.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7. 7.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2017. 7.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년 가산세 2,960,478원, 2012년 가산세 9,181,624원, 2013년 가산세 1,288,897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제10쪽 부터 제14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다. 판단

1) 납세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6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3,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귀속연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700건 이상의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파산관재 업무를 시작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의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보수는 총 300,700,000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원고의 전체 수입의 약 76%를 차지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합은 약 487,500,000원 이상에 이른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보조인 및 사무실 유지비용이 개인파산관재인의 보수에서 일부 지급되어 이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보수의 액수가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4)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는 없고 법원의 파산관재인 후보자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선임되는 것이며,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것인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파산관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그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52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개인변호사인 파산관재인과 비용처리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 보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경 국세청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법원행정처는 2014년경 각급 법원에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외부회생위원, 파산관재인에 대한 보수금 지급시 액수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세금공제 관련 협조를 요청한 사실, 법원행정처는 2014. 7. 8.자 '관재인 등 보수와 원천징수 실무 관련 자료'에 "관재인 등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 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에 대하여 관재인 등 보수를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회신, 법원행정처의 공문 및 2014. 7. 8.자 관재인 등 보수와 원천징수 실무 관련 자료 등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그것이 사업성을 띠게 된 경우에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 점, ② 서울지방국세청장 내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원고의 해명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인 것으로 확인하여 준 바 없는 점, ③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파산관재인 보수는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보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여부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적법하게 과세소득을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 하에 스스로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세액 계산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을 제1 내지 3호증(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결의서)의 각 기재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해 보면, 각 정당한 세액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0,522원(= 8,981,000원 - 2,960,478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32,966원(= 33,714,590원 - 9,181,624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65,723원(= 15,854,620원 - 1,288,897원)이 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8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지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602,052원(= 6,020,522원 × 10%, 원 미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버림,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453,296원(= 24,532,966원 × 10%),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456,572원(= 14,565,723원 × 10%)이 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즉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898,100원 부과처분 중 602,05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371,460원 부과처분 중 2,453,29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585,460원 부과처분 중 1,456,5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12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